

대부업 관리감독 강화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
사업위치	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국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사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66,295천원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66,295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 %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466,295천원		466,295천원	0 %	
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
466,295천원		466,295천원	0 %								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부업 합동지도점검 실시(연8회), 상시점검(연중) ○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및 대부업 피해예방 교육 실시 ○ 대부업 사무 자치구 위임에 따른 자치구 시비보조금 지급 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서울특별시										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지역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	원안가결
운영비보조	해당없음.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경제진흥본부	민생경제과	장영민 2133-5360	이규호 2133-5374	김미영 2133-5403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4년 예산액	2015예산액 (A)	2016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	(x-)
계	(x-) 337,463	(x-) 390,946	(x-) 466,295	(x-) 75,349	(x-) 19
사무관리비	(x-) 23,200	(x-) 22,800	(x-) 22,800	(x-)	(x-)
국내여비	(x-) 4,800	(x-) 4,800	(x-) 8,000	(x-) 3,200	(x-) 66
특정업무경비	(x-) 9,600	(x-) 12,000	(x-) 7,200	(x-) △4,800	(x-) △40
자치단체경상보 조금	(x-) 299,863	(x-) 351,346	(x-) 428,295	(x-) 76,949	(x-) 21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사무관리비	○ 자치구 대부업 교육 실시 = 4,800천원
	- 교육자료 = 4,000천원 20,000원*2회*100명
	- 강사료 = 800천원 200,000원*2명*2회
	○ 분쟁조정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= 18,000천원
	- 회의 참석수당 = 7,500천원 150,000*5명*10회
	- 위원회 심사수당(분쟁조정사건) = 10,000천원 200,000*5명*10회
- 회의 다과비 등 = 500천원 5,000*10명*10회	
국내여비	○ 합동기동 단속여비 = 8,000천원 20,000원*20일*2명*10개월
특정업무경비	○ 대부업 특사경 수사활동비 = 7,200천원 200,000원*3명*12월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대부업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= 428,295천원 1,529,000원*28명*10개월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------	---------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대부업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
-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
- 대부업무 관련 인건비 지원을 통한 자치구 위임업무의 안정적 수행 지원

□ 사업근거
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-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
-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0년 ~ (계속)
- 사업내용
 - 대부업 합동 지도점검 실시(연8회), 상시점검(연중)
 - ▷ 내용 : 시, 자치구, 금융감독원 합동단속 실시
 - ▷ 지원대상 : 금감원 파견직원(2명) 등
 -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및 대부업 피해예방 교육 실시
 - ▷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월1회 개최(보증채무 무효 확인 등 조정신청)
 - ▷ 개인대부업자 채권추심 실무자 등 대부업체 대상 교육(상하반기 총2회)
 - 대부업 사무 자치구 위임에 따른 자치구 시비보조금 지급
 - ▷ 내용 : 대부업 사무 보조 인력 28명 인건비 지원
 - ▷ 방법 : 자치구 등록 대부업체수에 따라 차등 지급(중구, 서초, 강남구 2명)
- 총사업비 : 428,295천원 (전액 시비)

□ 추진경위

- '02.12.11. :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
- '09.09.17. : 대부업사무 자치구위임 일정별 업무추진계획(금융도시담당관-4843)
- '10. 1월~ : 대부업 등록 및 처분권한 자치구 이관 및 시비 보조금 지급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- 대부업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?감독 강화
-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

○ 대부업무 관련 인건비 지원을 통한 자치구 위임업무의 안정적 수행 지원

□ 사업추진절차

○ 기본계획 수립(시) → 사업진행 → 사업비 집행 → 결과보고

□ 2016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428,295	
기본계획 수립	2016.01		
사업추진	2016.01~2016.12	428,295	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, 대부업체 합동 지도점검,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
결과보고	2016.12		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3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3년 대부업체 점검실시(2,966개 업체) : 행정조치 총 1,721건 ○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정실적 : 273건(신청인 80명), 채무감액 633,000천원
2014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부업 불법광고물 모니터링 : 광고물 7,7802개, 불법의심사례 11,709건 ○ '14년 대부업체 점검 실시(1,087개 업체) : 행정조치 총 2,400건 ○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정실적 : 301건(신청인 88명), 채무감액 721,654천원
2015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부업 불법광고물 모니터링 : 광고물 17,860개, 불법의심사례 19,659건 적발 ○ '15년 대부업체 점검 실시('15.11월 기준) : 854개 업체, 행정조치 총 640건 ○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정실적('15.12월 기준) : 126건, 채무감액 307,408천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- 건전한 대부업 육성 및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
- 대부업 관리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

○ 대부업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예방 효과 극대화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2	(x-) 494,899	(x-) 0	(x-) 0	(x-) 309,412	(x-) 302,191	(x-) 0	(x-) 7,221
2013	(x-) 287,208	(x-) 0	(x-) 0	(x-) 287,208	(x-) 278,675	(x-) 0	(x-) 8,533
2014	(x-) 337,463	(x-) 0	(x-) 0	(x-) 337,463	(x-) 324,039	(x-) 0	(x-) 13,424